

2022년 2학기 상시

품격 높은 세계인

전·편입학 전형 요강



2022. 8.



대원외국어고등학교
DAE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2022년 2학기 상시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전·편입학 전형 요강

1 모집 학과 및 모집 인원

학년	전형 구분	전 공 어 과 별					합 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1학년	정원내	일반전형					10
		사회통합전형	2	1	2	3	
		*다자녀가정자녀 지원 가능여부	가능	불가	가능	불가	

학년	전형 구분	전 공 어 과 별						합 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2학년	정원내	일반전형	1		1	1	1	4
		사회통합전형	2	6	1	2	2	7
		*다자녀가정자녀 지원 가능여부	가능	불가	불가	불가	가능	20

※ 학과별로 지원 후 선발 모집하며(복수 학과 지원 금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모든 지원자는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다자녀가정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과별 최대 모집정원을 정함

(1학년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일본어과 및 2학년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일본어과는 사회다양성전형 다자녀 가정자녀 모집 정원 없음)

※ 2022년 8월 전·편입요강 및 규정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기본으로 함

2 지원 자격

가.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

1)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 서울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해당 학년 재학생

(단, ① 국내 재학생의 경우 2학년 1학기까지만 전입 지원 가능하며, 동일 계열인 외국어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지원 불가

② 해외 귀국 학생의 경우 3학년 일반전형 지원 가능)

2) 해외 귀국 학생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해외 귀국 학생

학 년	학기 이수 기준	비 고
1학년	- 국내외 총 18학기 이상 이수	중복학기는 별도의 2개 학기로 인정
2학년	- 국내외 총 20학기 이상 이수	
3학년	- 국내외 총 22학기 이상 이수	

※ 1년 3학기제의 경우 2학기 수료를 1학기로, 3학기 수료를 2학기로 산정함

※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 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지원 이전 입학홍보부에 전화 문의 요망

나. 전형 구분별 지원 자격 :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지원 전형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정 원 내	일반전형	공통자격을 갖춘 자													
	사회 통합 전형	기회 균등 전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table><tr><td>법정차상위대상자</td><td>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td></tr></table> 4)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제출한 자 5)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교육비지원확인서' 제출한 자 6)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50% 및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table><tr><td colspan="2">[학교장 추천 대상자 추천 요건]</td></tr><tr><td>1)</td><td>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td></tr><tr><td>2)</td><td>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td></tr><tr><td>3)</td><td>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td></tr><tr><td>4)</td><td>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td></tr></table> 7)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학교장 추천 대상자 추천 요건]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학교장 추천 대상자 추천 요건]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회 다양성 전형	1 순 위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 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5)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6)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7)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급~3급)의 자녀 8) 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순직 교원의 자녀													
	2 순 위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2)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3)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 경찰, 해양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위 이하)의 자녀													

※ 사회다양성전형은 2021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자격 부여

❖ 참고 사항 ❖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됨. 동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사회다양성 전형의 한부모가정(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자녀와 는 구분

나. 기회균등전형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증빙서류

-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제출
-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교육비지원확인서 제출

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추천 요건

-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라.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로 국가보훈 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18호 및 제7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제4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 제3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7조 제9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제3호

※ 보훈자 자녀로 교육지원대상자는 '보훈자자녀'전형(정원 외)으로 별도 지원하여 선발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가. 필수 요건 : 2021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 금액이 아래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사회다양성전형 필수 요건

- 1) 지역 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함
- 2) 직장 가입자 및 혼합(직장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과 재산세 납부 금액(연간)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납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70,536	174,281	171,997	561,150
3인	220,987	238,835	224,800	899,760
4인	270,748	300,338	278,094	1,242,480
5인	321,769	356,168	337,302	1,580,880
6인	380,152	420,252	414,255	1,915,440
7인	414,255	456,308	449,388	2,249,040
8인	486,115	531,814	540,144	2,582,400
9인	540,144	583,151	634,303	2,916,000
10인	634,303	661,710	816,530	3,249,6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세 납입금은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는 미포함

* 혼합(직장+지역가입자) : 부 또는 모 중 1명은 직장가입자이며, 1명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모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부금액은 부모(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참고자료1, 참고자료2)

나.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예시)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정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다.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개정으로 '장애 1급~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019.7.1.부터 용어 변경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자녀**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친부, 친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부금액(연간)을 모두 확인·합산하여 지원 자격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함

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 수 제한 없음),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가. 공통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전·편입학원서 (본교 소정 양식) 1부	- 날인 등 도장, 서명 필하여 제출
자기소개서 (본교 소정 양식) 1부	- 배제 사항 기재 시 0점 및 감점 처리 ■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 시험 점수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및 캠프)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 상기 배제사항에 대한 간접적·우회적 기재 모두 금지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감점 처리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본인 및 보호자 서명 후 서류 접수 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가 각각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부·모 각각 1부씩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인쇄**를 하고, 클립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묶어서 제출함(**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영어 등 각종 외국어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수료증 등은 제출하지 않음

나.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1) 중학교 생활기록부II, 고등학교 생활기록부II 각 1부

※ 학교생활기록부는 단면으로 출력하여 학교장 직인으로 날인 및 간인하여 제출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에 각각 해당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또는 담당 장학사의 확인 직인을 받아 제출

다. 해외 귀국 학생

1)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증명서 사본 1부

2) 해외 전(全)학년 성적 증명서 사본 1부

(단, 최근 4개 학기 성적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국내 학교생활기록부II 1부)

3) 해외학교 재학(졸업)증명서 사본 1부

4) 출입국 사실 확인서 사본 1부

※ 해외 전(全)학년 성적증명서와 해외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는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야 함

※ 단,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라(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메인>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타재**)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하고 **확인서**(「2022년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3월 전·편입 귀국 학생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함

라. 전·편입학 전형 지원자 추가 제출 서류 (사회통합전형)

대 상		제 출 서 류		
사회 통합 전형	사회통합전형 공통	• 2022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 보훈자자녀 · 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 2022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구청, 동주민센터	
	기회 균등 전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학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법정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교육청)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교육비지원확인서	학교(교육청)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추천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원본대조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 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 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 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대 상		제 출 서 류				
사회 통합 전형	사회 다양 성 전형	사회다양성전형 공통 (부·모 모두제출) ※ 등본상 가족 구성원 분리시에도 모두 제출	지역건강 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 보험료 혼합 (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제 출(전국단위 주택분 발급)	구청, 동주민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귀화증명서, 외국인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중 해당 서류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2019.7.1.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 1급~3급 ※2019.7.1.이후 발급 장애인 등록증 : 심한 장애		
		순직군경·순직공무원·순직교 원의 자녀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한부모가정자녀		‘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자녀’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부금액 (연간) 친부·친모 모두 제출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함		
		환경미화원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재직증명서		
		군인 자녀(준·부사관 이하)		재직증명서 또는 15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경찰, 해양경찰 자녀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위 이하)				

※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인쇄를 하고, 클립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묶어서 제출함(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는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영어 등 각종 외국어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수료증 등은 제출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력 옵션 중 ‘외고·국제고 입시용’ 탭을 선택 후 출력하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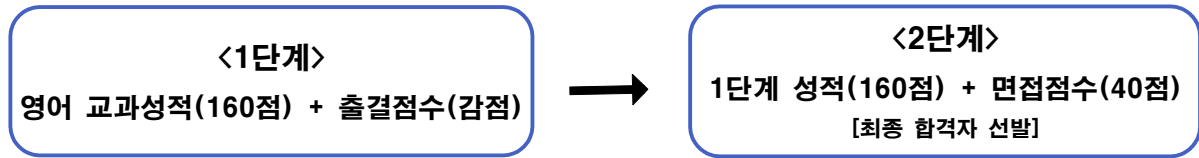
※ 학교생활기록부(단면 출력) 학교장 직인으로 날인 및 간인하여 제출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할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 제출

4

전형 방법 및 사정 기준

가.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1) 1단계 : 영어 교과성적(160점) + 출결점수(감점)
(모집정원의 2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선발)

가) 교과성적 산출 방식

영어 교과성적 = 최근 4개 학기 영어 교과성적 성취도별 부여점수의 합

- ※ 교과성적은 최근 4개 학기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한 성취도를 성적 산출 기준표에 의거, 점수화하여 반영(학기별 40점)
- ※ 1단계 동점자 발생 시, 최근 학기부터 국어, 사회 순서로 4개 학기 성취도 수준을 반영하여 선발하며 사회 과목이 없는 학기의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함.
- ※ 최근 4개 학기 중 국내 학교 성적이 없는 해외 학교 출신자의 경우 국어·사회 교과 대신 영어·사회 관련 교과(social studies, geography 등)를 반영함. 사회 관련 교과가 없는 경우 역사 관련 교과(history 등)를 반영하며, 역사 관련 교과가 없는 경우 외국어 관련 교과(spanish 등)를 반영함)
- ※ 1단계 최종동점자는 전원 2단계 전형 대상으로 선발함

나) 성적 산출 기준표

성취도	A	B	C	D	E
점수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 ※ 자유학기제가 포함된 학기의 경우, 성적 산출 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활용함 (예: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사 합격자 내신 성적 산출 방법

- ①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사 영어, 국어, 사회 과목의 원점수를 아래의 조건표에 의해 성취도를 반영한다.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사 원점수 환산 성취도

원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성취도	A	B	C	D	E

※(변경예고) 2022학년도 환산 성취도는 변경될 수 있음(추후 공지 예정)

라) 출결 상황 산출 방식(최근 3개년 반영)

(1) 국내 학교 재학 학기

출결 = - (미인정 결석 일수)

- ①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3회는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
- ② 출결 점수 최대 감점은 10점

(2)해외 학교 재학 학기

①출결 성적이 없는 자의 출결 점수 산출 : 최인접 학기 영어 과목 성취도 수준으로 반영

성취도	A	B	C	D	E
출결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 해외귀국자 서류 관련 사항

-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본교에서 원본대조필한 후 사본 제출 가능(원본대조 확인자 서명 날인)
-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단,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라(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메인>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탑재)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하고 **확인서**를 제출함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2) 2단계 : '1단계 성적(160점) + 면접점수(40점)'으로 선발

가)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면접점수 산출방식

면접 = 자기주도학습 (꿈과 끼 영역) + 인성영역 (면접을 위한 사전단계인 서류평가도 면접점수에 포함됨)

나) 영역별 평가 요소 및 배점

전형 구분	1단계	2단계	총 점
	영어 교과 성적 + 출결 성적	면접	
모든 전형	160	40	200

다) 면접 영역별 평가 내용

영역별 평가 요소	평가 내용	배점	관련 서류
자기주도학습영역 (꿈과 끼 영역)	■ 자기주도학습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동아리 활동 및 진로체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을 포함)	20점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Ⅱ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학교특성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10점	
인성영역	■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 중학교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핵심인성요소 】 핵심인성요소는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함	10점	

※ 자기소개서는 띄어쓰기 제외 1,500자 이내로 작성

라)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1)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 출력하여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에 제출한다.
 - ※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 지원자의 집합에 의한 자기소개서 작성 금지
 - ※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통해 표절,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감점 처리
- (2)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 0점 처리,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
 -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 시 0점 처리하며,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 등 조치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및 캠프)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OO지검 검사장인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OO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5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구 분	일 시	장 소	유의 사항
공 지	2022.08.22.(월)부터(상시)	홈페이지	○ 공지사항란 참조
서류 제출	2022.08.22.(월)부터(상시)	용마관 2층 입학홍보부	○ 접수시간: 09:00 ~ 16:00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서류 평가 및 1단계 합격자 발표	서류 접수 후 다음 날	개별 통지	
2단계 면접	1단계 합격자 발표 다음 날	본 교	○ 면접 장소 및 시간은 추후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단계 면접 다음 날	개별 통지	
합격자 소집 및 등록	최종 합격자 발표 다음 날	개별 통지	○ 등록 및 학사일정 등 안내

6

동점자 사정 기준

1) 1단계 전형 동점자 발생 시

- 최근 학기부터 국어, 사회 순서로 4개 학기 성취도 수준을 반영하여 선발 (사회 과목이 없는 학기의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

[국내 중학교 출신자 1단계 동점자 처리 기준 예시]

국어 3학년 2학기 성적 ⇨ 사회 3학년 2학기 성적 ⇨ 국어 3학년 1학기 성적 ⇨ 사회 3학년 1학기 성적 ⇨ 국어 2학년 2학기 성적 ⇨ 사회 2학년 2학기 성적 ⇨ 국어 2학년 1학기 성적 ⇨ 사회 2학년 1학기 성적순으로 선발함

※ 1단계 최종동점자는 전원 2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

※ **최근 4개 학기 중 국내 학교 성적이 없는** 해외 학교 출신자의 경우 국어·사회 교과 대신 영어·사회 관련 교과(social studies, geography 등)를 반영함. 사회 관련 교과가 없는 경우 역사 관련 교과(history 등)를 반영하며, 역사 관련 교과가 없는 경우 외국어 관련 교과(spanish 등)를 반영함)

[국내 학교 성적이 없는 해외 중학교 출신자 1단계 동점자 처리 기준 예시]

3학년 2학기 영어 → 3학년 2학기 사회(역사/외국어) → 3학년 1학기 영어 → 3학년 1학기 사회(역사/외국어) → 2학년 2학기 영어 → 2학년 2학기 사회(역사/외국어) → 2학년 1학기 영어 → 2학년 1학기 사회(역사/외국어) 순으로 반영

2) 2단계 전형 동점자 발생 시

2단계 동점자는 면접점수 총점 ⇨ 자기주도학습과정 영역 점수 ⇨ 인성영역 점수 ⇨ 지원 동기 및 진로계획 점수 ⇨ 영어 3학년 2학기 성적 ⇨ 영어 3학년 1학기 성적 ⇨ 영어 2학년 2학기 성적 ⇨ 영어 2학년 1학기 성적 ⇨ 출결점수(감점 적은 순) 순으로 선발

7

합격자 배제 조건

가. 입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위조·변조한 지원자
(합격자 발표 후에도 위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을 취소함)

나. 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결과 본교 교육과정의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원자

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진로·진학	진로상담 교사를 통한 진학지도 컨설팅 운영 진학지도 담당 교사와 졸업생을 통한 대입 면접 교육 졸업 동문 및 학부모 초청 진로 특강 지원 희망 대학 방문 및 견학 프로그램 실시 주요 대학 입학설명회 실시 및 대학 입학 담당자와 상담 기회 부여
학교 생활 적응	신입생 적응을 위한 품격교육 담임교사 개별 상담활동 및 특별지도 전문 상담교사를 통한 상담활동
교과 향상	주요교과 질문 교실 운영 (국어·영어·수학·과학) 졸업생 멘토링을 통한 영어 및 전공어 1:1 개인 지도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 탐구활동인 특색 수업 학생 희망에 따른 선택형 방과후학교 자율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스터디, 학술동아리 활동
비교과 / 인성 교육	1인 1기 Spo-arts활동(예술 및 체육 활동) 1인 1동아리 활동 학교 축제 공연 및 전시 활동 전원 참가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리더십 캠프 나눔과 배려를 배우는 꽃동네 봉사활동 문화 예술 프로그램 관람 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영어 및 전공어 인증시험 응시료 지원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 위 프로그램은 본교 1학년(2022학년도 신입) 재학생을 기준으로 실시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에 따라 프로그램의 수와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지원 내용은 해당 본인에게만 공지됨

나. 교육비 지원 내용 [2021학년도 기준 참고사항]

■ 지원 근거 : 「2021학년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참여협력담당관-2270, 2021.2.22.)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반드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기간 : 교육비 지원 신청한 날이 있는 월부터 ~ 학년도 말까지

○ 지원기준 : 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사회통합전형 입학 선발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기준은 입학이후 2022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2022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아님.

■ 지원 내용

○ 법정저소득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는 학기

중 법정저소득자격이 상실되더라도 학년도 말까지 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에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각각 50%씩,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일반전형, 사회다양성전형, 정원 외 전형)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일반 학교 수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청에서 지원, 일반학교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본인이 부담

○ 학교운영지원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교육청에서 일반학교 수준까지 지원(차액 본인 부담)

○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사회통합전형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 교복비, 졸업앨범비, 기숙사비 등의 수익자부담경비를 교육청에서 지원(사업별 운영 계획에 따름)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학비 지원 사업 단계별 종료 계획」(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10793)에 의거,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학비 지원(일반고수준) 종료 예정

교육비 지원 관련 유의 사항

1. 2022학년도 교육비 지원은 2022년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세부 지원사항이 결정됨**

※ **아래 지원 사항은 2021학년도 기준이며, 2022학년도 신입생은 상기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함**

가.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불가함**

나.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 입학자는 기회균등전형 입학자와 지원방법(금액)이 상이함

학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항목

- ▶ 근거 : 「2021학년도 학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참여협력담당관-2270(2021.2.22.))
- ▶ 법정저소득 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지원기준		지원 범위			비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전형 무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96,800원 이내)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급여 지급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frac{1}{2}$ 지원	$\frac{1}{2}$ 지원	△ (96,800원 이내)	입학금 및 수업료 $\frac{1}{2}$ 구청 지급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	○	○	△ (96,800원 이내)	
	특수교육대상자 (중위소득60%이하)	○	○	△ (96,800원 이내)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	○	○	△ (96,800원 이내)	
기회균등전형 입학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 (96,800원 이내)	
사회다양성전형 및 일반전형 입학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생)		△	△	△ (96,800원 이내)	법정저소득 자격 아닌 학생

○ : 전액지원 △ : 일반고 수준으로 교육청에서 지원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항목

지원자격		지원 항목	대상 확인
입학전형 무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40만원 이내) -수련활동비(14만원 이내) -앨범비(5만원 이내, 고3 졸업예정자)	NEIS ⇨ 학생복지 ⇨ 교육비지원 ⇨ '심사관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		
기회균등 전형 입학	중위소득 50% 이하		

※ 단,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의 경우 : 일반 학교와 지원 기준 동일

- 가. 지원은 학과별로(복수 학과 지원 금지) 하며,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나.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며, 입학전형 및 전형 종료 후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본교에서 포괄적으로 활용됨. 따라서 지원자는 입학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다. 입학전형에 관련된 개인정보 및 자료는 본교의 입학업무에만 활용되고, 입학사정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본인에게도 공개되지 않음
- 라. 해외 귀국 학생의 경우 서류 제출 시 본교 입학홍보부에서 이수 학기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필해야함
- 마. 해외 귀국 학생의 경우 해외 학교 성적증명서 및 재학사실증명서는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아포스티유 인증 혹은 재외 공관에서 정규 학교임을 입증하는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함 (단,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라(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메인>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탑재)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하고 **확인서**를 제출)
- 바. 학력 인정이 되지 않은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사. 원서 및 제출 서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아. **전형료는 27,000원으로 원서 제출 시 납부**
- 자.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과 수업료는 자율화되어 있음
- 차. 모집 공고 이후 추가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집 인원내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카. 모집 공고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결원이 있을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충원 여부에 대한 의결 과정을 거쳐 지원자의 성적 순위에 의해 추가로 충원할 수 있으며 합격자 미등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타.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 파. 본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Intelligence·Humanity·Courage

Dae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www.dwfl.hs.kr

우04939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6(중곡 4동)

·Telephone : (02) 2204-1513/1525 ·Fax : (02) 2204-1544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2021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합산(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을 확인·합산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금액 적용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재산세납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70,536	174,281	171,997	561,150
3인	220,987	238,835	224,800	899,760
4인	270,748	300,338	278,094	1,242,480
5인	321,769	356,168	337,302	1,580,880
6인	380,152	420,252	414,255	1,915,440
7인	414,255	456,308	449,388	2,249,040
8인	486,115	531,814	540,144	2,582,400
9인	540,144	583,151	634,303	2,916,000
10인	634,303	661,710	816,530	3,249,600

※「202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20.12.) 및 서울특별시 가구원수별 소득에 따른 재산세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세 납부금액은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는 미포함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 최소 원서 접수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은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가구원 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합산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소득이 없는 달(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은 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산정
-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6만2천원)